

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

교무위원회 통과일자 : 2019.03.11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의 각급 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하여 총장 및 각급 보직자 및 각 부서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용어의 정의) “업무추진비”라 함은 각급 보직자의 소관 단위기관의 운영과 각 부서의 운영상 특수한 대내외적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명시적 비용을 말한다.

제 3조(집행)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에 규정된 활동에 대하여 집행한다.

제 4조(지급방법 및 사무처리) 업무추진비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기안과 별표 2, 3에 의거한 지 불증빙서에 의하여 집행하며,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지급 관리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5조(지급대상 및 사용한도액) 지급대상자와 사용한도액은 총장이 예산편성 심의 시 이사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 6조(재원) 당해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관리운영비, 운영비, 업무추진비목으로 책정한다.

제 7조(기밀엄수) 업무추진비 관련 교직원은 이의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(제3조 관련)

1.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.행사

- 가. 대학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격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나. 대학의 교류 활동, 벤치마킹, 교육, 현지조사, 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접견하는 경우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다.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대학 및 기관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라. 총동창회, 협력기관, 산하기관 등에서 거행되는 행사 또는 행사관계자에 화환 또는 식사 제공

2. 주요 정책 또는 대학 홍보

- 가. 대학의 주요 정책 또는 대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및 기관관계자와의 간담회 또는 접견 시 의례적인 수준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나. 입시 홍보 활동에 따른 간담회 또는 관계자 접견 시 의례적인 수준의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다. 다른 기관.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라. 내방객(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)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

3. 학내구성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
- 가. 학내구성원이 재난.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내구성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나. 학내구성원의 퇴직 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다. 학내.외 각종 평가나 경기(시합)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내구성원 또는 학내구성원의 소속 학과 및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라. 학내 용역직원에게 대해 명절 또는 부활, 성탄절 등 필요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마. 교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바. 비상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사. 대학축제 등 학생 활동에 대해 현장 격려 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아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내구성원의 연말, 설, 추석 또는 그의 생일 등에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
- 자. 학교발전 또는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차. 입학식, 졸업식, 개교기념식 등 교내.외 각종 행사시 총장상을 수여받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카. 학내 구성원간의 간담회 시 구성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- 타. 학내구성원이 올림픽대회, 월드컵대회,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아경기대회, 전국체육대회, 시·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대학을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 또는 수상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
파. 학내구성원이 자체 공연, 작품발표회를 하거나 공공기관, 언론기관의 공연단, 악단, 영화·연극단, 예술단, 학술단체, 사물놀이단, 합창단 공연 등의 대외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
4.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

- 가. 유관기관의 장 또는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유관기관 관계자의 퇴임 또는 전·출입하는 경우와 해당기관장에게 의례적인 화환·화분·기념품 또는 격려금품 지급
- 나. 각종 기념식 및 개소식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·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
- 다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말, 설, 추석 또는 대학의 교류활동, 벤치마킹,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
- 라. 유관기관장 또는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유관기관 관계자의 혼사 또는 조사에 보내는 축의금품 또는 부의금품

5.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

- 가. 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, 그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 제공
- 나.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·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·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 결식자, 이재민,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
6.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

- 가.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·다과 재료의 구입
- 나. 교직원의 축의·부의금품
 - 1) 지급 대상 범위 : 결혼 또는 사망, 본인의 교회직 취임, 출산 등
 - 2) 지급 대상자 :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- 다. 특별 내빈(이사장 및 총장 역임, 명예이사, 5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, 학교 발전에 기여한 지역 교계 목사 장로 등) 관련 축의, 부의금품
 - 1) 지급 대상 범위 : 결혼 또는 사망, 본인의 교회직 취임 등
 - 2) 지급 대상자 :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(별표 2)

업무추진비 사용명세서

대신대학교 총무과

(단위: 원)

업 무 명	일 자	사용내역	집행금액	비고
입시홍보활동	2019.09.05	2020 입시홍보 간담회 시 다과(한남 미용정보고등학교 간담회(주·야간))	354,000	2-나
입시홍보활동	2019.09.06	2020 입시홍보 간담회 시 식사(진량 음 부녀회 월례회)	500,000	2-나
학내구성원 격려	2019.09.10	2019년 추석명절 교직원선물 추가 구매(양말 30세트)	307,500	3-아
입시홍보활동	2019.09.10	2020 입시홍보 간담회 시 다과(진량 고등학교, 김재국 목사 외 2)	200,000	2-나

※ 업무명에는 추진대상 업무의 명칭을 기입합니다.

※ 사용내역에는 육하원칙에 의한 내용을 기입합니다.

※ 비고에는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 별표1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의 번호를 기입합니다.

(별표 3)

영수증 첨부지

대신대학교 총무과

업 무 명	정기노회 본교 홍보차 방문	금 액	160,000 원
1. 업무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영수증은 사업장(상호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업태, 종목 등)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. 2. 각 장마다 아래 영수 합계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고 날인하여 주십시오.			
영수증 매수 : 1		영수합계금액 : 660,000 원	사용자 김신욱 (인)